

상주시 공고 제2023-1340호

「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며,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기
- 나. 상위법령 「아동복지법」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 수정, 삭제 등 조례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기능(안 제2조)
- 나. 구성·운영 등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- 라.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
- 마. 회의 및 비공개(안 제6~7조)
- 바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8~10조)
- 사. 자료 제출의 요구 등(안 제11조)
- 아. 간사, 회의록,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2~14조)
- 자. 비밀유지의 의무(안 제15조)
- 차. 운영세칙(안 제1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 아이여성행복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)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